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 · 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 · 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06	1. 구성
	10	2. 관련법령

II.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5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6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5)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	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2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35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8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3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45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46	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소위원회	52	1. 상정 법률안 목록
------	----	--------------

IV.

상임위원회	54	1. 상정 법률안 목록
-------	----	--------------

V.

본회의	5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5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4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I.

환경노동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수 16

현원 16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힘 6

비교섭단체 1



위원장
안 호 영

선 거 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경기 김포시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강득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태선

울산 동구
초선(제22대)



위원
박정

경기 파주시을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박해철

경기 안산시병
초선(제22대)



위원
박홍배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이용우

인천 서구을
초선(제22대)



위원
이학영

경기 군포시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소희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김위상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우재준

대구 북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조지연

경북 경산시
초선(제22대)

진보당



위원
정혜경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소관기관

정부기관(3)	환경부
	노동노동부
	기상청
환경부 소속기관 (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홍수통제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5)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환경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국립공원공단법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	먹는물관리법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	물관리기본법
	1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물환경보전법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석면안전관리법
	26	석면피해구제법
	27	소음·진동관리법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9	수도법
	3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습지보전법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33	악취방지법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환경부	3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9	자연공원법
	40	자연환경보전법
	41	자원순환기본법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4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5	지속가능발전법
	46	지하수법
	4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8	토양환경보전법
	49	폐기물관리법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2	하수도법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4	한국수자원공사법
	55	한국환경공단법
	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7	화학물질관리법
	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60	환경교육진흥법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6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63	환경보건법
	6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5	환경분쟁 조정법
	66	환경영향평가법
	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9	환경정책기본법
	70	하천법
기상청	1	기상관측표준화법
	2	기상법
	3	기상산업진흥법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고용노동부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법
	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고용정책 기본법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	공인노무사법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3	국가기술자격법
	14	근로기준법
	15	근로복지기본법
	1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	노동위원회법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9	숙련기술장려법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1	임금채권보장법
	32	자격기본법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7	직업안정법
	3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고용노동부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	최저임금법
	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4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6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7	윤석열 정부 12·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9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0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집단소송법안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O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O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8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디지털자산기본법안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상품권법안
		2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O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O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O	3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O	1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1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0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0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5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7	공도 진흥법안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업회의소법안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3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O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O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40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4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4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기본법안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복지공단법안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에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
		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3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보위원회		1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666호

이 정 문

선 거 구 충남 천안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6.0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2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32호



이 강 일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4.25.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3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294호

이 정 문

선 거 구 충남 천안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5.01.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4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16호



김 동 아

선 거 구 서울 서대문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4.25.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5

정무위원회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650호

민 병 덕

선 거 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6.02.	제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과 인구 집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은 과거 조선·자동차·석유화학·기계산업 등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지역 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수도권 중심의 금융·투자 인프라로 인해 동남권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거점 기반의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부울경 메가시티 2.0” 전략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산업·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동남권의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역 특화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 금융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금융 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동남권은 조선·항만·물류·자동차·부품소재·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나,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함. 수도권 중심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함.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동남권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 소재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자금 용자를 제공함(안 제20조).

- 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하며,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운영과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함(안 제5조).
- 라.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사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함. 대표이사는 금융·투자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며, 이사회 및 감사 등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명시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공사는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지원 및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해당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
- 바. 공사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따르며, 예산·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하고, 공사의 업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 제35조).
- 사.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함(안 제8조, 제38조).

6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36호



김 장 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16.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 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657호



김 현 정

선 거 구 경기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6.04.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훔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8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22호



박 홍 배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5.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48호



민 형 배

선 거 구 광주 광산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횃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1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10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445호



이 소 영

선 거 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0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3 혹은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937호



신 영 대

선 거 구 전북 군산시김제시
부안군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 · 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 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 · 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 ·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 · 연구개발 · 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12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14호



김 태 호

선 거 구 경남 양산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4선(제18대, 제19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4.15.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증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70호



이 학 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2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 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04호

최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13.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러나, 일부 앱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 Act) 시행 이후 앱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 국내도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마켓사업자가 자기 앱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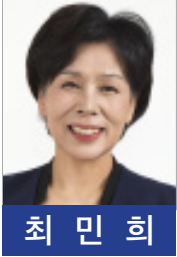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앱마켓사업자가 자기 앱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97호



선 거 구 경기 남양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재선(제19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2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연방법원 배심평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위반이라고 사실 확정하였고,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4년 4월 11일)에서 구글의 내부문서를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강제 결합행위가 없었다면 기껏 최대 1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드러났으나, 국내 앱 마켓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약 5배에 달하는 부당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의 국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업상 보복적 수단으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등).

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06호

조인철

선 거 구 광주 서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5.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96호



황 정 아

선 거 구 대전 유성구를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7.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09호

박 성 민

선 거 구 울산 중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247호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4.3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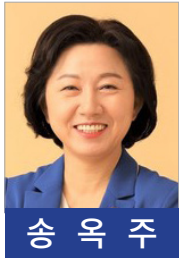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20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981호

송 옥 주

선 거 구 경기 화성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2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 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6).

이에 더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982호



김도읍

선 거 구 부산 강서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4.21.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22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325호



맹 성 규
선 거 구 인천 남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01.	제안

제안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뉜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116조제1항).

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116조제5항 신설, 안 제1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다. 개정 또는 삭제되는 조항에 따라 다른 조항들의 조문을 수정함(안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3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473호

김 정 재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북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5.12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 · 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 · 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O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0283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05.01.	원안가결
	2025.05.16.	정부이송
	2025.05.27.	공포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안 제14조의8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특례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8제6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
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
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투
자회사에 적용되는 보고·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안 제49조의8 신설).

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49조의9 신설).

사.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부
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220327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2026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220295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참고자료

참고 1 리츠에 대한 각종 보고·공시 규정

※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항목	보고근거	보고	공시근거	공시
리츠 공통	정관 변경	법 §41①4	○	감독규정 §6②1	○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로 정관 변경	영 §43②8	○		
	최대주주 변경			시행규칙 §6③2	○
	현물출자	법 §41①1	○		
	최저자본금 확보 사실	영 §43②1의2	○		
	일반공모청약 계획·결과	영 §43②1의3	○	시행규칙 §2①	○
	임원 변경	법 §41①2	○		
	임원 현황·경력증명서			감독규정 §6①2, ②2	○
	거래제한 자와 거래	법 §37③, 법 §41①3	○		
	해산	법 §41①3의2	○		
	합병·해산 계획·결과	영 §43②1의4	○		
	부투법상 처벌 받은 경우	영 §43②2	○	법 §37③3의2	○
	업무상 중대 소송 당사자	영 §43②3	○		
	파산 신청·선고	영 §43②4	○		
	회생절차개시 신청·인가·폐지	영 §43②5	○		
	직전 분기말 총자산의 10% 이상 자산의 취득·처분 결정	시행규칙 §6③1			○
	경공매 등 부동산 취득 또는 사업자 지위 확정	영 §43②6	○		

리츠 공통	주주총회 특별결의	영 §43②7	○		
	주주총회의사록			법 §37③3, 감독규정 §6②9,⑤	○
	이사회이사록	감독규정 §6①②,10,⑤			○
	다른 법령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서	영 §43②9	○		
	신용평가 결과서	법 §25의3①	○	영 §29③	○
	법인이사의 이사회 업무 보고서	법 §14의5⑤	○		
	감독이사의 리츠 유관자에 대한 보고 요구권	법 §14의7②,③	○		
	주식 인수자에게 제공하는 주식청약서	법 §17①, 감독규정 §3⑥	○		
	투자설명서	감독규정 §3①	○	영 §40조의2③1	○
	투자보고서	법 §37①	○	법 §37①	○
	실사보고서	법 §24③	○	감독규정 §6②6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독규정 §6①3,②2,⑤			○
	금융사고 · 부실자산 발생	법 §37③2			○
	업무위탁계약서	감독규정 §6①7,②7,⑤			○
자기 관리 리츠	준법감시인 임면	법 §46②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현황,경력증명서)	법 §37③1	○	감독규정 §8①2	○
	내부통제기준	감독규정 §8①3	○	감독규정 §6①8, §6⑤	○

참고 2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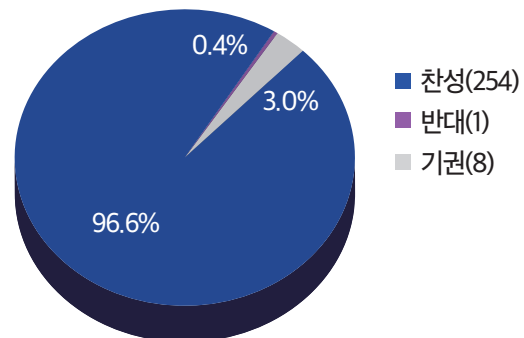
종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인가요건 (제9조)	설립 요건 준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 구성 요건 준수 여부 ■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요건 (제9조의2)	-	■ 설립 요건 준수 ■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국민연금공단 · 연금 등의 보유지분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 구성 요건 준수 ※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으로 구성
최저자본금 (제10조)	70억원	50억원	50억원
적격성 심사 (제11조)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하여 주식을 소유 하는 자)에 대해 실시	-	-
공모 (제14조의8)	■ 인가·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 ■ 공모의무 면제 - 인가 · 등록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 연금 등의 보유지분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경우 - 총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미적용 (의무사항 아님)

주식의 분산 (제15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 소유한도 예외 - 국민연금공단 또는 연금 등 - 총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미적용 (제한 없음)
상장 (제20조)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장		미적용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	상근 5명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상근 5명	
부동산의 처분제한 (제24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시행령)에 처분 금지 - 처분제한 예외 -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 리츠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미적용 (제한 없음)
자산의 구성 (제25조)	- 부동산: 매 분기 말 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매 분기 말 총자산의 80% 이상		미적용 (제한 없음)
배당 (제28조)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의무배당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 의무배당	미적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9조)	자기자본의 2배 초과 불가(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10배 범위 이내)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4.30 / 2025.05.01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63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63인(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8인)



찬성 (25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 영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근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반대 (1인)

한창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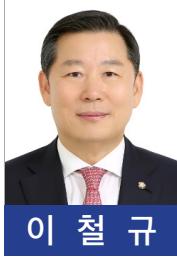
기권 (8인)

곽상언 박상혁 용혜인 윤종오 이광희 이용우 전종덕 정혜경 의원

2

전기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49호



선 거 구 강원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05.01.	원안가결
	2025.05.16.	정부이송
	2025.05.27.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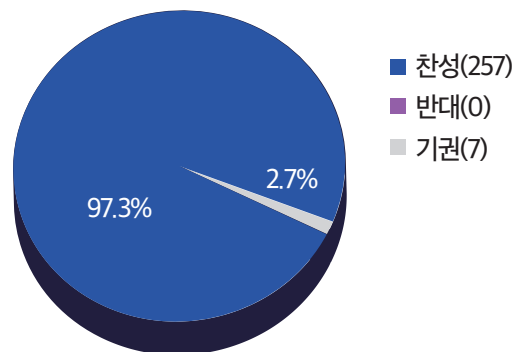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4.08.27 / 2025.05.01
- 발의자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표결 의원 : 재석 264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64인(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7인)





찬성 (25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근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에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기권 (7인)

문금주 민형배 박선원 박홍배 임미애 장종태 한준호 의원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0289호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05.01.	원안가결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구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구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제9항 신설)

마. 기존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자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신고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부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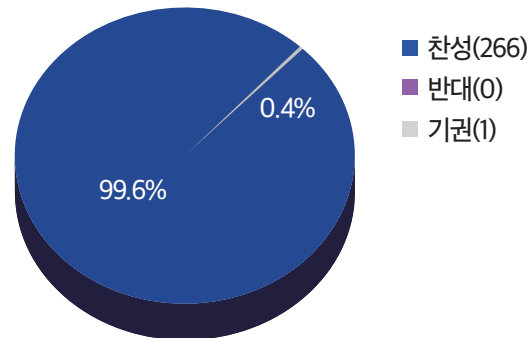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영세업체 부당 대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5건)

- [22038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4인)
- [22027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 [220135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22021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5인)
- [22010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4.30 / 2025.05.01
- 발의자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67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67인(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1인)



YES 찬성 (26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의원



기권 (1인)

박수민 의원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⑥),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청문회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된다 해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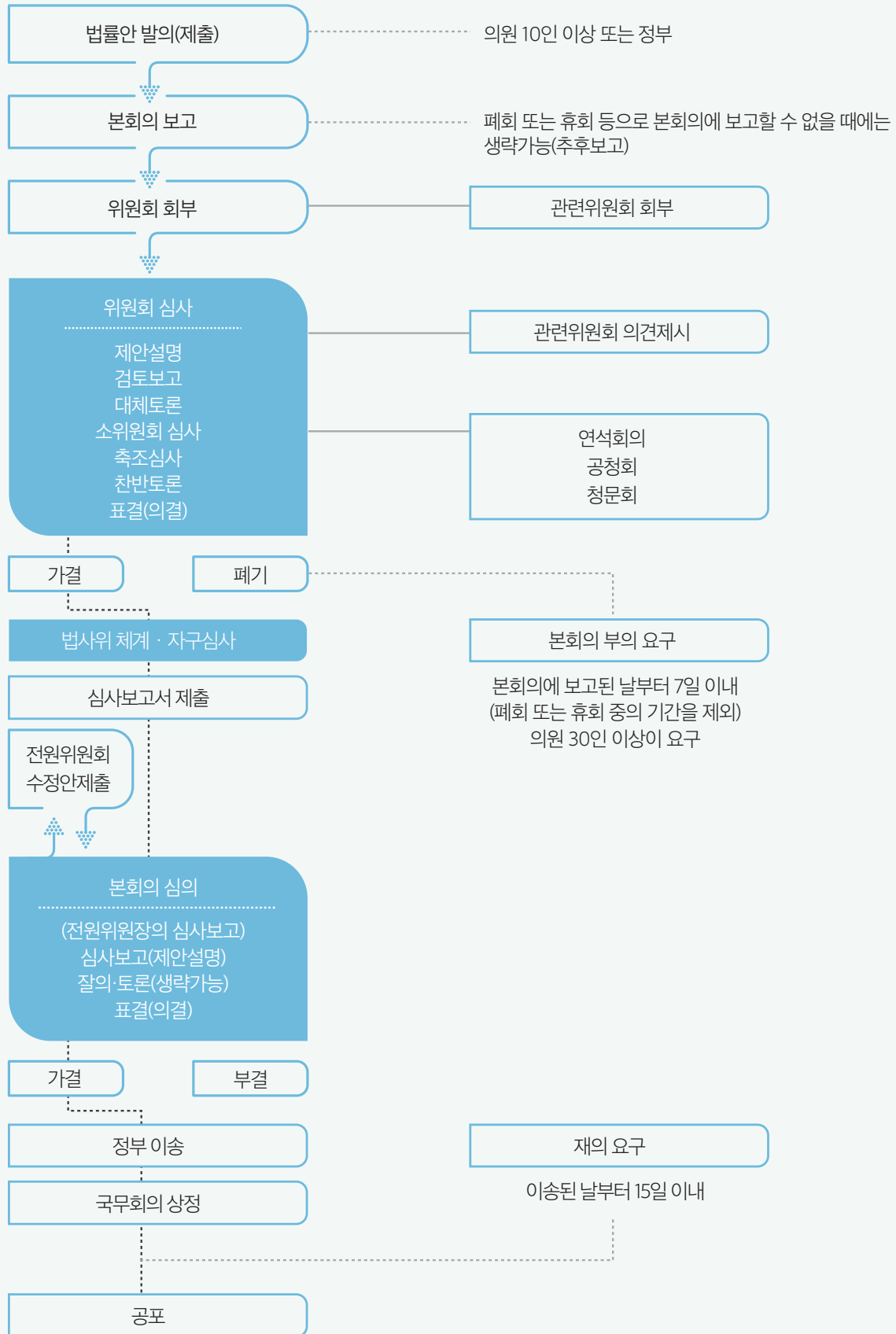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5,6월호는 2025.4.15.부터 2025.6.13.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자 위원회	4월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	29일	30일	5월 1일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월	수	목	금		
본회의	● 제424회 제3차	● 제424회 제4차	● 제424회 제5차					● 제424회 제6차					● 제424회 제7차																										● 제42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																																					
국토교통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P & B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